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7259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피 고 ○○시 ○○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10. 23.
판 결 선 고 2025. 11. 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5. 원고에게 한 취득세 5,910,500원, 지방교육세 435,210원 합계 6,345,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254조 제1항에 의하면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고, 소장이 제 249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를 특정하고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및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소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원고가 2024. 9. 25. 위와 같은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을 추후 제출하겠다고 기재한 사실, 원고가 2024. 10. 7. '7일 이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청구원인을 보완하며, 납부고지서와 행정심판 결정문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라.'는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으나 2024. 10. 8. 인지대와 송달료만을 납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청구원인을 누락하였고, 이를 보완하라는 재판장의 보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따라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나,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판결로써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1-17

판사 정○○

판사 이○○